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5호

##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시설-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5.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시험 구분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예정)	비고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시설 (건축)	일반 9명	강원도교육감이 지정 하는 기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의 건축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li> <li>-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li> <li>-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li> <li>- 공사발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하자검사, 안전 점검 등</li> <li>-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관련 업무 등</li> <li>■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li> </ul>	
			장애인 1명			

###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 요건 등의 심사)

-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2)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 3)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3.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9.1.23.(수) ~ 1.25.(금) 09:00 ~18:00	제1차	서류전형	-	-	2019.1.30.(수)
	제2차	면접시험	2019.1.30.(수)	2019.2.7.(목)	2019.2.11.(월)

※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 공고 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1)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2) 응시연령: 18세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3) 성별: 제한 없음
- 4)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경우
- 나)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경우
-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5)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라) 응시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건축관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한 사람
- 건축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

직렬 (직류)	자격증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1.23.(수) ~ 1.25.(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2층]

다. 접수방법: 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접수기간내에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제출(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대리접수 시 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또는 우편제출(등기우편)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반드시 전화 (033-258-5237)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응시표 수신을 위한 반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용 우표를 부착하시고 본인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2422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사농동)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2019년 지방공무원 시설(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라. 응시수수료: 5,000원

※ 방문접수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계좌입금처리 (우편접수시 계좌입금은 담당자[033-258-5237]에게 계좌번호를 안내 받은 후 입금처리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내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반드시 자필 작성</li> <li>■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li> <li>■ 응시수수료: 5,000원</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li> </ul>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상은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상세하게 기재</li> <li>※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li> </ul>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li> </ul>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li> </ul>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자필 기재</li> </ul>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자필 기재</li> </ul>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li> </ul>
8.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으로 제출</li> <li>※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하니 정확하게 작성(스캔, 이메일,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li> <li>-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도록 발급(발급담당자 확인이 미포함인 경우 하단에 별도 기재할 것)</li> <li>- 담당업무는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임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li> <li>- 비상근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li> <li>-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므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li> </ul>
9. 기타 자격증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자격증 외 기타 자격증이 있는 경우 [필수: 원본 지참]</li> <li>※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이 될 수 있음</li> </ul>
1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li> <li>-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미가입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경력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li> </ul>
11. 주민등록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li> <li>■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li> </ul>
12. 장애인등록증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선발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을 제출</li> </ul>

##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 중 원본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거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공고합니다.
-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본 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지역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자.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3-258-52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임용분야	응시번호
		지방시설서기보(건축)	담당자기재

###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응시자격) 자격증 사본 ※ 원본 지참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경력증명서(원본)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기타 자격증명서(원본 지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주민등록초본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2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19년 1월 일

성명

(서명)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자 본인이 서류제출 여부에 “✓” 표시
-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계를 사용하여 편철(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금지)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9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시설(건축)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b>※ 응시번호</b>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가.					
	※		( )		

.					
		( )			
		~			
		~			
		~			
		~			

.					
		( )			
		( )			

2019	: ( )
------	-------

**《작성요령》**

- ※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작성 (입력란 추가 가능)
- ※ 경력: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사항만 기재
-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20 . . . . . 작성자 : (서명)

## 자 기 소 개 서 (1/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등을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인쇄로 출력

【별지 제3호 서식】

20 . . . 작성자 : (서명)

## 자 기 소 개 서 (2/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등을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인쇄로 출력

【별지 제4호 서식】

20 . . . 작성자 : (서명)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1/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인쇄로 출력

【별지 제4호 서식】

20 . . . 작성자 : (서명)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2/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인쇄로 출력



【별지 제6호 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b></p>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b></p>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채용 시 필요한 제반 정보</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성명 : (서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성명 : (서명, 인)</p>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교육감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